

정부,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제도 실시

- 10월부터 상한가 14만원, 하한가 9만5천원 책정

농림수산부는 돼지, 소의 주기적인 가격파동을 방지하고 돼지고기, 쇠고기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90소, 돼지가격 안정대」를 설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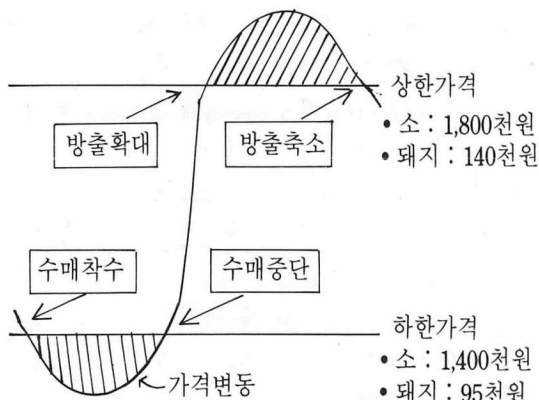
「가격안정대」는 하한가격과 상한가격 범위내에서 가격을 유지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가격안정제도로서, 시장가격이 하한가격을 밑돌 때에는 정부가 시장에 매입, 돼지·소를 수매비축하고, 상한가격을 상회할 때에는 수매비축분의 방출을 확대하거나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농림수산부가 설정한 돼지의 상한가격은 90kg 비육돈기준 14만원(지육 kg당 2,427원)이고 하한가격은 9만5천원(지육 kg당 1,650원)으로 가격안정대는 금년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소의 상한가격은 수소 400kg기준 180만원(지육 kg당 7,575원)이고 하한가격은 140만원(지육 kg당 5,939원)이다.

가격안정대 산정방법은 과거 7년간 농가의 평균 판매가격×생산비증가율×(1± 가격 진폭률/2)×돼지의 경우는 5년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특히 농림수산부는 시장가격이 하한가격을 밑돌 경우 돼지, 소 수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현재 축진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매자금 909억원을 '91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축산법을 금년내에 개정하여 91년부터는 가격안정제도가 법적인 뒷받침하에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돼지, 소의 가격안정대 운영 방법

농림수산부는 가격안정대 운영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사육심리 안정과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가격연동제는 폐지하고, 91년 하반기에는 육류등급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서울소재 도매시장에서 착수하는 등 축산물 유통제도의 대폭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가격안정대 설정에 대해 양돈 농가들은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진행, 인력난 가중, 양돈분뇨단속 심화, 지가상승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한가격을 9만5천원으로 하고, 상한가격을 14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양돈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으며, 하한가격은 생산비 수준으로 올리고, 상한가격은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